

## 제천시 평생학습조례안

의 안 번 호	999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6 . .  
제 출 자 : 제 천 시 장

### 1. 제 안 이 유

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제천시 평생학습협의회 구성·운영 및 제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

### 2. 주 요 내 용

#### ○ 평생학습협의회 구성·운영

- 목적 : 평생학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여 제천시 평생학습협의회 구성·운영
- 주요기능 :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, 시장의 자문
  -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-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  -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- 구성·운영 : 위원장 1인(부시장), 부위원장 1인(협의회 회선)을 포함한 15인 이내 구성, 임기 2년(연임 가능)

#### ○ 평생학습센터 설치·운영

- 목적 :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·지원
- 주요기능 : 다음 각호의 사업 수행
  -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
  - 평생학습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체계 구축
  -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·보급
  -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조직원 구성 : 센터에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음
- 운영 :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시 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음

### 3. 근 거 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평생교육법 제9조

### 4. 의 안 전 문 : 불 입

### 5.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첨 부 : 1. 제천시 평생학습조례안 1부

2. 입법예고 사본 1부

## 제천시 평생학습조례안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제천시 평생학습협의회 구성·운영 및 제천시 평생학습 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**제2조(기본원칙)** ①제천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.

②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.

**제3조(경비의 지원 및 학습시설의 지원)** ①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 
②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학습시설은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.

### 제 2 장 제천시 평생학습 협의회

**제4조(평생학습협의회 설치)**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제천시평생학습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5조(기능)**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고,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
2.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3.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6조(구성)**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과 시의원, 학계 및 사회단체 대표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

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**제7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고,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 단, 자치단체 소속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

**제8조(위원장의 직무 등)**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9조(회의 등)**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1.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
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협의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 3 장 제천시 평생학습 센터

**제10조(평생학습센터의 설치)**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개발·지원 등을 향상시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제천시 평생학습센터(이하 "평생학습 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시장은 평생학습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위치)** 평생학습 센터는 제천시립도서관내에 둔다

**제12조(기능)** 평생학습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평생학습 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
2.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체계 구축
3.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·보급
4.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13조(조직원 구성)** 평생학습 센터에는 평생 교육사를 둘 수 있다.

**제14조(운영)** 시장은 평생학습 센터를 직접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평생학습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

**제15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제천시평생학습조례 방침결정문

1. 조례명 : 제천시 평생학습조례
2. 제정(개정·폐지)이유 : 제천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 구성·운영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사항 규정
3. 주요내용
  - 제천시 평생학습협의회 구성
  - 제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
4. 제정근거 : 평생교육법 제9조
5. 제정조례안 : 붙임
6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(제정)
7. 관계법령
  - 평생교육법 제9조
  - 순천시 평생학습조례
8. 사업계획 : 평생학습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생학습구현
9. 예산상황 : 해당없음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지방자치법 (법률 제6002호, 99. 8. 31개정)

#### 제15조 (조례)

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평생교육법 (법률 제6003호, 99. 8. 31개정)

#### 제9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, 평생교육사의 양성,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· 시설 ·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#### 제11조(경비보조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.

순천시 평생학습조례(제정 2004.07.30 조례제745호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

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순천시 평생학습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본원칙)** ① 순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

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.

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희망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·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.

③ 시장은 지원 및 학습시설의 지정 ④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

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학습시설은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

**제4조(평생학습협의회)**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평생학습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**제5조(기능)**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,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

1.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
2.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3.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6조(구성)**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과 시의회의원, 학계 및 관계전문가, 사회단체 대표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시 평생학습업무담당과장이 된다.

⑤ 1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

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와 함께 한다.

**제8조(회의 등)**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 되었을 때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
3.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(예산)**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, 여비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8 【제1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부록】

---

제10조(실무 위원회) ①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②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시 평생학습문화자원센터소장이 되고, 실무위원은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학습기관 단체의 실무 임직원  
으로 한다.

③실무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 조정한다.

제12조(평생학습센터의 설치)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 및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과 공유 등을 통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

평생학습 사회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하여 순천시평생학습센터(이하 "평생학습센터"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

제13조(기능)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
2.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3. 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
4.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
5.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
6.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4조(운영요원)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